

제265회대구광역시의회(정례회)

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(부록)

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

【검토보고서】

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8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소방안전본부장)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4일

2. 주요내용

-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원이 '20명 이내' 인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'30명 이내' 로 확대함(안 제4조).
-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한도 예외규정을 명시함(안 제19조).

3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

- ▶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사항 반영 및 대구시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을 확대하고, 재난대응 활동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현실적 소집수당 지급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,

- ▶ 안 제4조제3호에서는 '20명 이내'의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법률 시행규칙 개정¹⁾ 반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'30명 이내'로 확대·조정하였음.
- ▶ 안 제19조제3호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의용소방대원²⁾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1일 8시간의 소집수당 지급한도 예외(초과)규정을 명시하였음.
 - 이는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

1) 제11조1항5호 - 전문의용소방대: 50명 이내(개정 전 20명 이내)

2) 정규 소방인력이 미배치된 지역(주로 농·어촌)에 소방력(소방차량, 장비 등)을 갖춘 민간중심의 인력을 활용하여 민간자율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조직(대구시 해당 없음)

- ▶ 이번 개정안 제출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이 '50명 이내'로 확대(2017. 8. 29. 개정)되고,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한도 예외규정(2018. 5. 8. 개정)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, 정원을 확대하여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 및 소방력 강화를 도모하고,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▶ 다만,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소방전문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이상으로 **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